

의안번호	제 2011 - 호
심 의 년 월 일	2011. (제 회)

의  
결  
사  
항

## 심 사 보 고 서

-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사건번호 : 2010하계1221)

공정거래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사무처장(심사관 전결)
제출년월일	2011. 3.

기안부서 김민하 과장 신동원 과장 김재무 사무관	장관실 장동석 사무차장 장준재 서기 // 의결의심작자
-------------------------------------	--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사의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별첨 심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심사보고서(심사관 : 기업협력국장 김성하, 사건담당자 : 하도급  
개선과장 신동열, 사무관 심재무) 1부.

2011년 3월 일

사무처장(심사관 전결)

<별첨>

## 심사보고서

### 1. 사건의 개요

#### 1. 사건의 경위

가. 사건의 단서 : 신고 (~~2010.4.7. 구민회의위원회 이첩~~)

##### (1) 피심인

롯데건설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대표이사 박창규

##### (2) 신고인

아하엠텍주식회사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6-36  
대표이사 안동권

#### 나. 신고 내용

피심인은 2008.6.6.~2010.2.28. 기간중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 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 공사(Tank Equipment, 강구조물 공사) 및 배관공사” 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 하였으며, 정산다툼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

<세부신고내역>

① 서면계약의무 위반 (8p, 법 제32 조 제2항 위반)

- PGC 가설비계 추가설치 공사, 배관물량 증가에 따른 불관공사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4p, 법 제42 조 제2항 위반)

[기계공사]

가 - 가설비계공사대금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나 - 제경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다 - Tank 공사대금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배관공사]

라 - 도장공사대금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리 - 돌관공사대금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추방량으로 하도급 결정금액

6303 5300 만원

(99~38P)

③ 대금미지급 (28p)

- 공사자체대금 및 물량증감대금(± 5.10% 포함),

토목오류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간접공사비 등

- 어음할인료 미지급[적권인지] → 법 제32 조 제1항, 제33 조 및 제34 조의 규정에 따른 (39p~40p)

④ 기타사항

- 기계공사의 철골상세설계비 대금미지급행위

- 현장출입제한에 따른 추가장비비 미지급행위

- 부당산제처리요구 및 처리비용미지급 행위

- 폐기물처리비 및 가설사무실비용 부당공제행위

-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행위

- 제경비과소반영행위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미조정행위

- Air Purge System 설치시 파손으로 인한 비용의 일방적 부당공제 행위

※ 기타 사항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임

다. 심사경위

- 2010.4. 7: 신고서접수(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2010.4.20: 사건착수보고
- 2010.4.20: 피심인 소명자료 및 신고인 신고보완요청
- 2010. 5.3: 신고인 보완자료 제출기일 연기요청
- 2010. 5.4: 피심인 소명자료 제출기일 연기요청
- 2010.5.26: 피심인 소명자료제출
- 2010.5.28: 신고인 보완자료 등 제출
- 2010. 6.30, 7.7: 신고인 추가신고 및 양당사자간 의견청취
- 2010. 8.13: 피심인 추가소명자료 제출
- 2010. 8.15-9.30 자료검토
- 2010. 10.1~ 심사보고서 작성

2. 당사자의 일반현황 및 당사자 적격성

가. 당사자의 일반 현황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소갑 제1호증)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회사명	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종업원수			자본금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롯데건설(주)	건설업	24,544	32,176	40,165	1,798	1,813	2,041	1,233
아하애탭(주)	기계설비공사업	297	524	636	83	96	115	22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주) 자료

나.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및 배관공사”를 건설위탁한 건설업 대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및 배관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표2>와 같이 2008.6.6.~2010.2.28. 기간중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 공사(Tank Equipment, 강구조물 공사) 및 배관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 하였다.

<표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금액	주요변경 내용
기계공사 (Tank Equipment, 강구조물공사)	2008.06.06.	2008.06.06.-2009.12.31.	11,847,000	최초계약
	2009.08.18.	2008.06.06.-2009.12.31.	14,171,300	신규항목추가 (23억원 증액)
	2010.01.29.	2008.06.06.-2010.02.28.	14,171,300	공기연장
Process 배관공사	2008.12.17.	2008.12.17.-2009.12.31.	7,002,600	최초계약
	2009.08.18.	2008.12.17.-2009.12.31.	7,869,400	신규항목추가, (8.6억원 증액)
	2009.09.30.	2008.12.17.-2009.12.31.	11,229,900	배관 및 도장물량증가 (33.6억원 증액)
계			25,401,200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제도개선사항 : 없음

## II.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 I. 서면미발급행위

#### 가. 행위사실

##### 1) 가설비계 추가설치공사

2008.6.6.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Tank Equipment, 강구조물 공사)” 를 건설위탁 하였다.

이후 2008.9.11. 위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설비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신고인의 전적서(346,200,000원)를 제출받은 후(소갑 제2-1호증), 2009.1.29. 신고인에게 당해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면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은 가설비계 추가 설치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변경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2) 배관공사 추가공사

2008.12.17.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배관공사” 1,455톤을 건설위탁 하였으며, 2009.8.5. 신고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 완료하였다. 이후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배관공사 물량이 추가로 996톤 증가하였으며, 피심인은 증가된 물량을 야간작업 등 돌관공사를 통해 조기에 시공완료 할 것을 신고인에게 요청하였다.  
(소갑 제3호증)

이에 신고인은 2009.8.13. 피심인에게 추가물량에 대해 기존 계약 단가의 30%~50%를 할증한 단가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9.8.28. 피심인은 우선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할증 적용에 대해서는 7일 내에 단가조정(협상)을 완료하기로 신고인과 합의하고 작업을 지시하였으나(소갑 제3호증), 공사 완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증적용에 따라 단가를 조정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법 제3조 제1항 및 2항에 정해진 바의 같이 수급공사 착  
공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가.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 1)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  
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  
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이 권정으로 본다.

1.3. (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2)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①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②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납기·운송·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내가전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정보 등을 충분히 성실하게 제공하리·등 충분한 확인을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유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도급대금 적정에 대한 한의(사)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② “낮은 단가” 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나. 가설비계 추가공사에~~

#### 1) 행위사실

2008.6.6.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Tank Equipment, 강구조물 공사)”를 건설위탁 하였으나, 이후 2008.9.11. 공사현장에 Platform Ladder<sup>1)</sup>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가설비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신고인의 견적서(346,200천원)를 제출받았다.(소갑 제2-1호증)

이에 피심인은 2009.1.29.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에게 당해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소갑 제2-2호증), 가설비계 추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9.8.18.에 이르러 신고인이 제시한 견적금액을 무시하고 발주자인 현대제철로부터 증액 받은(2009.7.17.) 46,073천원만을 추가공사금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3호증)

1)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플랫폼형 사다리 발판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II.2.나) 1)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제외로 판단된다.

첫째, 2008.9.11. 신고인이 추가 물량 및 공사금액에 대해서 공사 시공 전에 346,200천원의 견적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09.1.29. 신고인에게 당해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를 지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이 제시한 견적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피심인은 공사 완료 후에도 신고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9.8.14. 신고인이 추가공사에 따른 지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조속한 변경계약 체결과 대금지급을 요청하자(소갑 제2-4호증), 2009.8.18. 이러한 신고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당초 신고인이 제출한 견적액 346,200천원 보다 훨씬 적은 46,073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신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는데, 신고인은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잔여공사, 자금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변경계약한 46,073천원은 피심인이 신고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7.17. 피심인이 발주자인 현대제철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으로서, 이는 실제 공사를 수행한 신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발주자와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이다.

넷째, 신고인이 계속해서 추가 금액 지급을 요구하자 2010.9.17. 피심인은 자체적으로 가설비계 추가 설치물량을 산출하고 품셈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307,504,721원을 추가로 신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다.(소갑 제4호증)

<표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신고인 견적금액(A)	변경계약금액(B)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A-B)
346,200	46,073	300,127

###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가설비계 설치비용은 처음부터 신고인이 수행해야 하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의 상세내역이 없다고 합시다도 최 조외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로부터 증액 받은 만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설비계 설치비용은 별도로 공사내역서에 없었으며, Platform Ladder가 미설치 되어 많은 물량의 가설비계를 설치하여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가설비계 추가공사에 대해서 협의 후 견적서(346,200천원)를 제출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전적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알고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비록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증액 받은 금액이 46,073천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피심인과 발주처간에 합의한 금액일 뿐, 피심인과 신고인이 당해 금액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46,073천원을 증액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인의 제출한 견적금액 346,200천원보다 한지하 낮은 금액으로 변경계약은 유권한 한 행위는 일방적이며 낮은 단가에 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행위라 할 수 있다.~~

#### ~~다. 저가공사의 계약비~~

##### 1) 행위사실

2008.6.6.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를 10,770,000천원(부가세 제외)에 건설위탁 한 후, 2009.8.18. 신규항목추가 등을 이유로 2,113,000천원을 증액한 12,883,0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5호증)

<표4> 2009.8.18. 계약변경내역

내역	당초계약금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변경계약금액
자재비	1,873,220	3,455,795
노무비	5,135,265	5,812,545
경비	3,130,260	2,934,647
세경비(법정경비)	631,255	680,013
합계	10,770,000	12,883,000

<표5> 2009.8.18. 제경비 변경내역

제경비 내역	당초계약	변경계약	증감
고용보험료(노무비의 1.3%)	66,758,348	66,758,348	-
안전관리비(순공사비의 0.47%)	47,652,026	47,652,026	-
환경관리비(자재비의 0.75%)	14,082,000	14,082,000	-
국민연금보험료(노무비의 2.41%)	123,759,706	123,759,706	-
국민건강보험료(노무비의 1.25%)	64,190,719	64,190,719	-
일반경비 및 이윤(총공사비의 3.01%)	314,812,201	363,570,021	48,757,820
합계	631,255,000	680,012,820	48,757,820

2) 위법성 판단

제경비(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일반경비 및 이윤)는 위 <표5>에서와 같이 노무비, 자재비 등에 연동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규항목추가로 인해 재료비, 노무비, 순공사비 등이 늘어남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무비, 자재비 등이 증액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경비 및 이윤만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 제경비는 당초 계약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판단된다.

<표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제경비내역	당초계약 (A)	계약변경 (B)	정상계약 (C)	(단위: 원, 부가세 제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D=C-B)
고용보험료	66,758,348	66,758,348	75,563,085	8,804,737
안전관리비	47,652,026	47,652,026	57,354,040	9,702,014
환경관리비	14,082,000	14,082,000	25,918,463	11,836,463
국민연금보험료	123,759,706	123,759,706	140,082,235	16,322,529
국민건강보험료	64,190,719	64,190,719	72,656,813	8,466,094
일반경비 및 이윤	314,812,201	363,570,021	378,494,314	14,924,293
합계	631,255,000	680,012,820	750,068,950	70,056,130

라. 기계공사 TANK 설치설치비

1) 행위사실

2008.6.6. 피심인은 발주자인 현대제철로부터 Tar Decanter 등 16기의 Tank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신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중 Tank 설치공사를 <표7>과 같이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다(소갑 제6호증).

<표7> TANK 설치공사 계약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Tank	수량	단가	금액
1	Tar Decanter 2sets	300	550,000	165,000,000
2	Coal water Tank 2sets	170	320,000	54,400,000
3	Enriched water Tank	34	550,000	18,700,000
4	Deacidified water Tank	27	550,000	14,850,000
5	Stripped water Tank	16	550,000	8,800,000
6	Waste water Buffer Tank 3sets	192	550,000	105,600,000
7	Crude Tar Tank 2sets	187	550,000	102,850,000
8	Crude Benzol Tank 2sets	80	550,000	44,000,000
9	Caustic Soda Tank	20	550,000	11,330,000
10	Fresh Oil Tank	25	550,000	13,750,000
	합 계	1,051		539,280,000

이후 2009.8.10. 신고인은 피심인의 당초 현장설명과 달리 작은 규격의 Tank 자재가 반입됨에 따라 인건비, 장비비 등 Tank 설치대금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표8>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으나(소갑 제7호증), 피심인은 2009.8.18. 변경계약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계약금액 그대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5호증)

<표8> TANK 사양 반상에 따른 계약변경 요구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Tank 사양	2008.6.6. 당초 계약금액(A)			2009.8.10. 신고인 계약변경 요구금액(B)			증가액 (C=A-B)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1 Tar Decanter 2sets	300	550,000	165,000,000	348	2,109,556	734,125,000	569,125,000
2 Coal water Tank 2sets	170	320,000	54,400,000	120.4	2,849,827	343,119,200	288,719,200
3 Finriched water Tank	34	550,000	18,700,000	28.3	2,200,932	62,286,400	43,586,400
4 Deacidified water Tank	27	550,000	14,850,000	23.6	2,311,008	54,539,800	39,689,800
5 Stripped water Tank	16	550,000	8,800,000	15.4	1,881,480	28,974,800	20,174,800
6 Waste water Buffer Tank 3sets	192	550,000	105,600,000	163.5	2,747,133	449,156,400	343,556,400
7 Crude Tar Tank 2sets	187	550,000	102,850,000	233	1,923,548	448,186,800	345,336,800
8 Crude Benzol Tank 2sets	80	550,000	44,000,000	45.6	3,106,482	141,665,600	97,665,600
9 Caustic Soda Tank	20	550,000	11,330,000	20	1,331,430	26,628,600	15,298,600
10 Fresh Oil Tank	25	550,000	13,750,000	25	1,180,192	29,504,800	15,754,800
합계	1,051		539,280,000	1,022.8		2,318,188,000	1,778,908,000

2) 위법성 판단

당초 피심인과 신고인은 Tank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이 '3m×10m'인 것을 전제로 Tank 설치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실제 현장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규격(예: 1m×0.3m)의 자재가 반입되었다.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지나치게 작은 규격의 자재가 반입됨에 따라 신고인이 이들을 조립, 제작,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는 신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하도급대금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로 판단된다.

<표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2008.6.6. 최초 계약금액(A)	2009.8.10. 신고인 변경 요구금액(B)	2009.8.18. 변경계약금액(C)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B-C)
539,280,000	2,318,188,000	539,280,000	1,778,908,000

###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당초 계약당시 신고인에게 자재 규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자재 규격과 상관없이 '수량(ton)×단가' 방식으로 Tank 설치 공시비를 결정하기로 신고인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자재 규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대제철과의 도급계약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도급계약 당시 자재 규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심인도 자재 규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다.

첫째, 2007.6.16. 발주자인 현대제철은 Tank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피심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진중공업과 'Tank 자재 공급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부속서류인 '장비운송계획(Delivery Plan for Equipments)'에 따르면 자재의 규격은 'Ave. 3m×10m'로 명시되어 있다.(소갑 제8호증).

이후, 2007.12.28. 피심인과 현대제철은 Tank 설치를 포함한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Tank 자재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 없이 '수량(ton)×단가' 방식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2007.11월 도급공사 현장설명 당시 피심인에게 자재규격이 명시된 '장비운송계획(Delivery Plan for Equipments)'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심인이 자재 규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고인 또한 2008.5월 하도급공사 현장설명 당시 피심인이 자재 규격을 'Ave. 3m×10m'로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자재의 규격에 따라 공사의 범위가 달라지며 비용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조립이 이루어진 큰 규격의 자재가 반입될 경우 단순히 설치공사만을 수행하면 되나, 작은 조각품으로 자재가 반입될 경우 상당량의 조립 작업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및 당시 피심인의 기재됨성으로 근무원 회근에의 진출(소강 제9호중)방으로 비루이 분 때, 현대제철과 신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자재규격을 물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비록 자재 규격이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나, 당해 하도급계약이 피심인이 제시한 자재 규격을 전제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재 규격 또한 하도급계약 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역시 당연히 이러한 자재 규격을 기초로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자재 규격과 상관없이 '수량(ton)×단가' 방식으로 Tank 설치 공사비를 결정하기로 신고인과 합의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배관공사 도장공사비

1) 행위사실

2008.12.17.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배관공사" 를 건설위탁 하면서 도장공사에 대해 <표10>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강 제10호중)

<표10> 2008.12.17. 도장공사 계약내역

(단위:원, 부가세 제외)

명칭/규격	단위	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도장공사	m <sup>2</sup>	9,700	60,363	585,521,100

이후 2009.9.30. 피심인은 도장공사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표 11>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단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소강 제11호중 )

<표11> 2009.9.30. 도장공사 변경계약내역

(단위:원, 부가세 제외)

명칭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도장공사	m <sup>2</sup>	9,700	60,363	585,521,100	56,515	15,720	888,415,800

- 2)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계약과 롯데와 현대제철의 계약에서 당시 롯데는 오직 설치(약간의 조립도 있습니다만) 금액이었는데 입고되는 부품들은 탱크 뿐만 아니라 오직 현진과 현대의 일방 해석에 따른 조각품(splii)의 입고에 따른 엄청난 인건비의 상승..."

2) 위법성 판단

피심인과 신고인이 합의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①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가되는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본근하도(초기) 계약단가(당초)인 60,363원/㎡에서 9,700㎡에서 56,515㎡로 증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60,363원/㎡에서 15,720원/㎡로 현저하게 낮게 조정된 해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상행위라 판단된다.~~

<표12>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제1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가되는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본근하도(초기) 계약단가(당초)인 60,363원/㎡에서 9,700㎡에서 56,515㎡로 증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60,363원/㎡에서 15,720원/㎡로 현저하게 낮게 조정된 해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상행위라 판단된다.~~

(단위: 원, 부가세 제외)

제정비내역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당초 계약(A)	㎡	9,700	60,363	585,521,100
변경 계약(B)	㎡	56,515	15,720	888,415,800
정상 계약(C)	㎡	56,515	60,363	3,417,451,24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C-B)				<del>2,529,035,445</del>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2009.9.30.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도장단가를 15,720원/㎡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008.12.17.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도 비록 도장공사 계약서 표제부에 도장단가가 60,363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계약 당시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 실제 도장단가는 13,905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①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전체 배관공사의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열처리비용' 과 '가설공사비' 로서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 갑지 및 을사에도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소갑 제13호증)

<표13> 2008.12.17. 도장공사 계약내역서 갑지

(단위: 원, 부가세제외)

구격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도장공사(검사비 및 가설 포함)	m <sup>2</sup>	9,700	60,363	585,521,100

<표14> 2008.12.17. 도장공사 계약내역서 을지

(단위: 원, 부가세제외)

명칭/구격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배관 및 Support	m <sup>2</sup>	9,700	13,905	134,878,500
도장공사 각종 검사비 및 열처리	매			220,000,000
가설공사비	m <sup>2</sup>			230,642,600
계				585,521,100

따라서, 도장물량이 당초 9,700m<sup>2</sup>에서 57,515m<sup>2</sup>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인 주장과 같이 57,515m<sup>2</sup>에 대해 도장단가 60,363원/m<sup>2</sup>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13,905원/m<sup>2</sup>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체 배관공사의 물량이 증가(1,455톤→2,451톤, 약 70% 증가)함에 따라 '각종 검사 및 열처리비용' 과 '가설공사비' 의 증가분도 이에 비례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568,021,580원으로 정산할 용의가 있음을 신고인에게 제시하였다.(소갑 제14호증)

나) 피심인 주장 검토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

- 4) 도장공사: 배관 및 Support 57,672m<sup>2</sup> × 13,905원 = 801,929,160원, 각종 검사비 및 열처리: 220,000,000 × 1.7 = 374,000,000원, 가설공사비: 230,642,600 × 1.7 = 392,092,420원 계: 1,568,021,580원  
 \* 공사완료 후 최종물량은 56,515m<sup>2</sup>에서 57,672m<sup>2</sup>로 1,157m<sup>2</sup> 증가

첫째, 2008.12.17. 계약당시 피심인은 신고인회 '감사비 및 가설공사'를 포함한 도장공사'의 단가를 60,363원/㎡에 합의하였다. 이후 물량증가에 따른 2009.9.30. 변경계약 시에도 공사범위는 여전히 '감사비 및 가설공사'를 포함한 도장공사'로서 단가가 변동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이전 계약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인 15,720원/㎡에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4호증)를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표15>와 같이 계약단가를 인하하였다. 물량 증가에 따라 '각종 검사비 및 열처리 비용'과 '가설공사비'가 증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피심인이 정상적인 도장단가라고 주장하는 '배관 및 Support'의 단가 13,905원도 10,105원으로 인화된 점을 볼 때,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변경계약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5> 2009.9.30. 도장공사 계약변경에 대한 피심인 소명내용

(단위: 원, 부가세제외)

	단위	최초 계약(2008.12.17.)			변경 계약(2009.9.18.) 세부내역에 대한 피심인 설명		
		수량	단가	계약금액	수량	단가	계약금액
배관 및 Support	㎡	9,700	13,905	134,878,500	56,515	10,105	571,084,075
각종 검사비 및 열처리	매			220,000,000			150,000,000
가설공사비	㎡			230,642,600			167,361,760

셋째,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배관공사 물량 증가분만큼 '각종 검사비 및 열처리 비용'과 '가설공사비'를 증액시켜 줄 것을 제시하였다. 배관공사 물량증가를 '각종 검사비 및 열처리 비용'과 '가설공사비'의 증액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심인의 정상단가라고 주장하는 13,905원/㎡이 낮은 단가임을 피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관공사 물량증가분~~

1) 행위사실

2008.12.17.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현대제철 일관세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배관공사” 1,455톤을 건설위탁 하였으며, 2009.8.5. 신고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 완료하였다.

그러나 추후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배관공사 물량이 추가로 996톤 증가하였으며, 피심인은 증가된 물량을 야간작업 등 배관공사를 통해 조기에 시공완료 할 것을 신고인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2009.8.13. 피심인에게 추가물량에 대해 기존 계약 단가의 30%~50%를 할증한 단가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2009.8.28. 피심인과 신고인은 공사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우선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할증 적용에 대해서는 7일 내에 단가조정(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9.9.30. 할증 적용 없이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3,055,000천원만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소갑 제11호증),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0.1.26.에는 이미 1년 전인 2009.1.7. 있었던 ‘화성공장 Process 배관 Kick-off Meeting(소갑 제15호증)’ 당시 “물량증가분에 대한 변경계약시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이유로 할증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인에게 통보하였다.(소갑 제16호증)

- 5) 갑(롯데건설)과 을(아하엠텍)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첫째, “을”이 요청한 증감 및 신규 추가 물량에 대한 할증적용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재 공사기간중이므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1차 계약변경을 우선 하고 증감 및 신규물량의 할증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을”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조속한 시일(7일)내에 검토완료 및 단가조정 협상을 완료한다.

이후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증감물량 및 신규추가 물량에 대해 기존 계약금액에 30%를 할증한 금액 1,981,650천원을 시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2010.4.7. 우리 위원회에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2010.9.17. 피심인은 추가공사비중 노무비와 경비 부분에 대해서만 30%를 할증 적용한 금액 774,137천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할 의사를 제시하였다.(소갑 제17호증)

## 2) ~~위법성 판단~~

위 II. 2. 바의 1)항과 같이 배관공사 물량증감 및 신규추가 물량에 따른 신고인의 들관공사비 할증 요청에 대해, 우선 입시로 기존단가를 적용하되 7일 이내에 단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할증적용을 거부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2009.8.13. 신고인은 배관공사 물량증감 및 신규추가 물량에 대해 각각 30% 및 50% 할증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피심인에게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은 할증 적용 없이 기존 계약단가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2009.8.28. 피심인은 신고인과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우선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하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단가조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만을 확인하면 될 뿐, 신고인이 주장하는 할증적용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 신고인은 이미 2009.8.28. 회의 당시 할증 적용에 대한 상당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며(소갑 제3호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

셋째, 통상 추가 물량의 공기단축에 따른 들관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보다 할증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 6)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넷째, 피심인이 할증비용 불가의 이유로 신고인에게 통보한 '화신 공장 Process 배관 Kick-off Meeting' 회의자료는 2009.1.7. 작성된 것으로, 2009.8.28. 피심인과 신고인이 새롭게 합의한 내용에 우선할 수 없으며, 그 내용 또한 '2009.3월 물량증가분에 대한 변성계약시 기존 계약가가 기준으로 한다'의 의미로 본 건 돌관공사와는 무관하다.

반약, 피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피심인은 이미 2009.8.28. 회의 당시 Kick-off Meeting 회의자료를 근거로 할증 적용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신고인과 할증 적용에 합의한 것은, 공사진행을 위해 신고인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섯째, 신고인의 지속적인 할증요청 및 공정위 신고에 따라 피심인이 추후 노무비와 경비 부분에 대해서만 30% 할증 적용한 금액 774,137천원만을 지급할 의사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스스로도 할증적용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은 신고인이 할증적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하자, 실제 할증혜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할증혜 줄 것처럼 신고인을 기만하여 우선 기준 단가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공사가 완료되자 불합리한 사유를 내세워 할증적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단위: 원, 부가세제외)

2009.9.30. 변경계약에 따른 증가액(A)	도장공사비 증가를 감안한 증가액(B)	<del>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액</del>
3,055,000,000원	5,584,035,445원	<del>1,675,210,633원</del>

1. 위 II. 2 의 라항에 적시된 '배관공사 도장공사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분(2,529,035,445원)을 감안하여 정상가격으로 환원할 경우의 증가액
2. (B)에 통상적인 할증률 30%를 곱한 금액

###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본건 공사의 설계사인 Uhde사의 설계도면 출도가 2개월 늦어진 것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관작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2009.8.27. 8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에는 신고인이 주장하는 증가된 공사물량까지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물량증감 및 신규 추가물량에 대한 할증을 적용해 줄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첫째,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한 850,000천원은 기존 계약물량과 관련하여 Uhde사의 설계도면 출도가 2개월 지연되자 당초 계획에 맞추기 위해 2개월 공기단축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 반면, 신고인의 할증요청은 기존 계약물량이 아닌 추가 물량의 공기단축에 대한 것으로 별개이다.

둘째, 피심인은 Uhde사의 설계도면 출도 지연으로 인한 불관공사비와 관련해서는 2009.8.27. 별도계약으로 이미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2009.8.28. 물량증감 및 신규추가 물량에 대한 할증적용에 대해 신고인과의 행위사실 (1)과 같이 합의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별개의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2009.8.28. 회의 당시 신고인이 작성한 회의자료인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황' (소갑 제3호증)에 따르면, Uhde사의 설계도면 출도 지연에 따른 불관비용과 증가물량의 공기단축을 위한 할증요구는 별개의 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자. 결론

(1) 피심인의 위 II. 2. 바.의 각 1)항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위 II. 2. 바.의 1)항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된다.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표17>과 같이 신고인에게 '현대세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 및 배관공사' 를 건설위탁 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 지급기일이 초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증가대금 및 공사 자체 대금 등 하도급대금 2,476,987,91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8호증 확인서).

<표17>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하도급 공사명	하도급대금			지급액	잔액	목적물 인수일
	계약금액	물량증가 (추가공사포함)분	계			
기계공사	12,883,000,000	3,250,943,850	16,133,943,850	15,355,800,000	778,143,850	2010.02.28
배관공사	10,209,000,000	1,698,844,060	11,907,844,060	10,209,000,000	1,698,844,060	2009.12.31
합 계	23,092,000,000	4,949,787,910	28,041,787,910	25,564,800,000	2,476,987,910	

(2) 피심인은 <표18>과 같이 '현대세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배관공사' 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 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7,21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9호증)

<표18>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목적물 인수일	하도급대금 어음지급내역			기산일 (목적물인수일+61일)	어음할인료	
	지급일자	지급금액	어음만기일		지연일수	미지급금액
2009.09.30	2009.10.09	2,702,619	2009.12.31	2009.11.30	31	17,215

- 7) 피심인이 물량증감(추가공사포함)등에 따라 인정하는 하도급 대금 증가분 심사보고서에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별도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임
- 8)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이 선지급한 2,472,8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산정 내역

산고인은 피심인이 위법한 '현대제철 인관제철소 화성분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및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표19>와 같이 추가금액을 요구하며 피심인과 최종 하도급대금에 대해 협의하던 중, 2010.4.7. 우리 위원회에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였다.

<표19> 신고인 하도급대금 추가요구 금액

(단위 : 원, 부기세 제외)

항목	당초계약금액	변경요청금액	증감	비고
<b>1. 기계공사(Tank Equipment 강구조물공사)</b>				
- Equipment 가설비계	46,072,500	346,202,035	300,129,535	부당하도급대금결정
- 형강판계부족분 <sup>10)</sup>	-	332,284,000	332,284,000	
- Grout <sup>10)</sup> (토목오류분)	25,920,000	287,942,400	262,022,400	
- ± 5%물량정산 <sup>11)</sup>	-	76,239,300	76,239,300	
- Tank 추가제작비	-	1,778,908,000	1,778,908,000	부당하도급대금결정
- 절골 상세설계비	-	443,141,810	443,141,810	별도 검토
- 제경비 미반영	680,012,820	1,505,443,573	825,430,753	부당하도급대금결정
- 기타(물량증가 등)	12,130,994,680	15,115,205,743	2,984,211,063	
<b>소계</b>	<b>12,883,000,000</b>	<b>19,885,366,861</b>	<b>7,002,366,861</b>	
<b>2. Process 배관공사</b>				
- ± 10%물량정산 <sup>12)</sup>	-	469,406,103	469,406,103	
- 배관도장공사	888,415,800	3,481,254,936	2,592,839,136	부당하도급대금결정
- 돌관공사비	-	1,981,650,955	1,981,650,955	부당하도급대금결정
- 기타(물량증가 등)	9,320,584,200	10,770,988,957	1,450,404,757	
<b>소계</b>	<b>10,209,000,000</b>	<b>16,703,300,951</b>	<b>6,494,300,951</b>	
<b>3. 기타사항</b>				
- 제경비 과소반영분	-	199,681,431	199,681,431	별도 검토
- 장비출입제한	-	458,000,000	458,000,000	별도 검토
- 산재합의금	-	97,592,400	97,592,400	별도 검토
<b>소계</b>	<b>-</b>	<b>755,273,831</b>	<b>755,273,831</b>	
<b>합 계</b>	<b>23,092,000,000</b>	<b>37,343,941,643</b>	<b>14,251,941,643</b>	

- 9)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누락 및 부족지체에 대한 원자제구입을 하도록 하고 지급하지 않은 비용
- 10) 피심인이 토목공사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신고인에게 추가 시공하도록 한 그라우트 공사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비용. (그라우트란 기계높이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기초콘크리트위에 무수축물탈(콘크리트종류)을 채우는 것을 의미)
- 11) 피심인이 구매시방서 상의 정산조항 "계약물량±5%(기계공사) 기준범위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음" 을 이유로 물량정산시 공사금액 변동폭이 ±5% 초과한 경우 증가분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5% 초과부분만 인정해 준 것에 대해 신고인은 전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
- 12) 위 11)과 같은 사항으로 배관공사의 경우에는 ± 10% 정산조항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부당하도급대금 징집행위 및 방법으로 징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2010.6.16. 피심인은 <표20>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서(공문)를 신고인에게 제시하였으며, 2010.9.16. 동일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소갑 제18호증)

<표20> 신고인 요구에 대한 피심인 인정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항목	신고인 요구 금액(A)	피심인 인정 금액(B)	차이 (A-B)
1. 기계공사(Tank Equipment 강구조물공사)			
- 형강판재부족분	332,284,000	428,474,300	-96,190,300
- Grout(토목오류분)	262,022,400	218,822,400	43,200,000
- ± 5%물량정산	76,239,300	37,683,000	38,556,300
- 기타(물량증가 등)	3,809,641,816	2,565,964,150	1,243,677,666
소계	4,480,187,516	3,250,943,850	1,229,243,666
2. Process 배관공사			
- ± 10%물량정산	469,406,103	461,163,355	8,242,748
- 기타(물량증가 등)	1,450,404,757	1,237,680,705	212,724,052
소계	1,919,810,860	1,698,844,060	220,966,800
합계	6,399,998,376	4,949,787,910	1,450,210,466

이에 대해 신고인은 피심인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 금액 차이가 나는 1,450,210,466원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정확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피심인이 인정하는 4,949,787,910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우선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2009.12.21. 피심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2,472,800,000원을 선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경우 2,476,987,910원을 미지급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표 21> 피싱인이 인정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

피싱인 인정 하도급대금(A)	2009.12.21. 신고인의 기말 요청에 따른 피싱인 선지급 금액(B)	(단위: 원, 부가세 제외) <del>2,476,987,910</del>
4,949,787,910'	2,472,800,000(B)	2,476,987,910

심사보고서(무당하도급대금선정), 검토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는 부분 제외

다. 관련 법규정

1) 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으로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13) 피싱인이 선지급한 금액 30억원에서 기계약분 중 미지급액 527,200천원을 공제한 금액

2)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2009.8.21.부터 시행)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  
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60호 2009.9.15.부터 시행)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라.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476,987,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sup>14)</sup>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  
된다.~~

피심인이 위탁한 공사를 신고인이 완료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피심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비록 하도급대금 증액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최종적으로 하도급

14) 기계공사는 공사완료일이 2010.02.28.이므로 이 날로부터 61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배관공사는 공사완료일이 2009.12.31.이므로 이 날로부터 61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대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하나, 정산 다름은 이유로 무회상 지급을 부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소한 피심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이유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7,21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신고인이 공사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해야만 신고인에게 미지급대금 2,476,987,91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사안은 양 당사자간 정산다툼이 있어 최종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신고인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하자이행보증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건 위탁공사의 특성상 기존 계약부분과 추가 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종 하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신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제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바. 결론

피심인의 위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Ⅲ. 고려사항

1. 유사심결례

- 없음

2. 최근 3년간 범위판 사실 4회(별첨 4점)

사건번호	위반유형	조치유형	조치일자	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비고
2010서건0282	대금지연지급행위	경고	2010.2.25.	0.5	신고
2009하개1009	서면미교부행위	경고	2009.4.15.	0.5	재신고
2008하개1421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과징금	2008.10.2.	2.0	직권조사
2008협정0299	대금지연지급행위	경고	2008.1.30	0.5	서면실태조사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상황 여부 : 미 운용

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사용

5.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사용 여부 : 미사용

6.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여부 : 미사용

7.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여부 : 미사용

IV. 단서와 계약 조건

피심인의 계약에 대한 계약의 해임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행위 관련 인건비 배분에 관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  
배행위 관련 인건비 배분의 행위를 제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  
해임과 관련하여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명령 하에 제25조 제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은 부패행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23,360,000원)

- 다 음 -

1. 시정명령

가. 피심인 롯데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와 배관공사”와 관련  
하여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PGC 가설비계의 추가공사  
및 배관공사의 둘관공사를 위탁하면서 수량 및 단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함에도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 롯데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와 관련한 PGC 가설  
비계의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 롯데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와 관련한 제정비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 피심인 롯데건설(주)은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중 Tank 설치공사의 Tank 세척·설치공사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피심인 롯데건설(주)은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한 도장공사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피심인 롯데건설(주)은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한 물관공사비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할증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할증해 줄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피심인은 롯데건설(주)은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 공사 및 배관공사”를 건설취탁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476,987,91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7,215천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자.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 ~~바, 다, 라, 마, 메, 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아하엠텍(주)에게 ~~별지 2의~~ 금의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P.31

## 2. 과징금 납부명령

- 피상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과징금액 : 별지 과징금 산정 기초사실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별지1> 과징금 산정 기초사실

〈별자1〉 과징금 산정 기초사실

1. 근거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25조의3
- 동법 시행령(개정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 제14조의2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이하 '과징금 고시' )

2.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및 근거 규정 적용

-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별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 과징금 고시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III.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법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2) 법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 위반금액(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별 위반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대상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2009. 8월 및 같은 해 9월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과징금 고시(개정 2009. 7. 10.)를 적용하여 산정

### 3. 과징금 산정 기초사실

#### 가. 위반행위 유형

- 부당한 하도급대금 전징

#### 나. 위반금액의 비율

- 대금미지급금액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관련 하도급대금  
(8,847,516천원/25,401,200천원)=34.83%

#### 다. 위반행위의 수 : 3개

#### 라. 과거 범위반 전력

- 과거 1년간 : 1점, 과거 3년간 : 4점

#### 마. 가중 및 감경사유 비율

- 가중 사유

가중사유	요건	해당여부
조사거부방해 기피 등	위반사업자 또는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
보복조치·탈법행위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범위반전력이 많은 경우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등, 100분의 40이내	해당

- 가중 사유

감경 사유	요건
위반행위 자진시정	-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시정한 경우 (40%) - 착수보고후, 심의일 전에 시정한 경우 (20%)
현금성결제 우수	-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20%) -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별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각 계약단계에 추가공사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단위:천원, 부가세 제외)

결정금액(A)	피심인 결정금액(B)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액(A-B=C)
346,200	46,073	300,127

~~년 제경비(비정경비 등)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단위: 원, 부가세 제외)

제경비내역	당초계약 (A)	1차계약변경 (B)	정상계약 (C)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액 (D)=(C-B)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1.3%)	66,758,348	66,758,348	75,563,085*	8,804,737
안전관리비 (순공사비의 0.47%)	47,652,026	47,652,026	57,354,040	9,702,014
환경관리비 (지세비의 0.75%)	14,082,000	14,082,000	25,918,463	11,836,463
국민연금보험료 (노무비의 2.41%)	123,759,706	123,759,706	140,082,235	16,322,529
국민건강보험료 (노무비의 1.25%)	64,190,719	64,190,719	72,656,813	8,466,094
일반경비 및 이윤 (총공사비의 3.01%)	314,812,201	363,570,021	378,494,314	14,924,293
합계	631,255,000	680,012,820	750,068,950	70,056,130

~~다 기계공사 TANK 제작설치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단위: 원, 부가세 제외)

2008.6.6. 최초 계약금액(A)	2008.8.10. 신고인 변경 요구금액(B)	2008.8.18. 변경계약금액(C)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B-C)
539,280,000	2,318,188,000	539,280,000	1,778,908,000

~~비관공사비의 부담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단위: 원, 부가세 제외)

제정비내역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당초 계약(A)	m <sup>2</sup>	9,700	60,363	585,521,100
변경 계약(B)	m <sup>2</sup>	56,515	15,720	888,415,800
정상 계약(C)	m <sup>2</sup>	56,515	60,363	3,417,451,24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C-B)				2,529,035,445

~~비관공사비 부담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단위: 원, 부가세 제외)

2009.9.30. 변경계약에 따른 증가액(A)	도장공사비 증가'를 감안한 증가액(B)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3,055,000,000	5,584,035,445	1,075,210,633

- 위 II. 2. 다. 에 적시된 '비관공사 도장공사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분(2,529,035,445원)을 감안하여 정상가격으로 환원할 경우의 증가액
- (B)에 통상적인 할증률 30%를 곱한 금액

~~가산비상도장공사비 6,353,333,208원~~

2011. 9. 06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및 처리결과 통지

사건번호 : 2010하개1221

사건명 :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창규

1. 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19회 제2소회의와 심의한 결과, 귀사의 가설비계 추가공사 서면미발급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엄중 경고 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 13조 제 1항 및 6항, 제 8항 규정여 위반되는 '하도급거래행위'*  
*PR(SBANK) 법 32 조 1항 규정여*  
*법 13조 제 2항 및 3항, 제 15조 제 1항 규정여*  
*1차 2차 심판을 관후, 또 다시*  
*상사로서 P32. 제 25조의 3. 제 13조의 2 규정여*  
*작성된 단서들은 향후 기간을 준수 소로*  
*시정조치 받은 단서*  
*위반의 경정조치에 대한 단서*  
*제 25조의 3. 제 13조의 2 규정여*  
*작성된 단서들은 향후 기간을 준수 소로*  
*시정조치 받은 단서*  
*위반의 경정조치에 대한 단서*

위반행위	위반법조	처리결과
○ 가설비계 추가공사 서면미발급행위	법 제3조 제1항 <i>PR</i> <i>상사로서</i>	- 추후 계약서면을 발급, 즉 서면발급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 <i>- 부당할 하도급 대금 거래 행위 (300,123,000원)</i>
○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제8항 <i>대! 임시적 상사로서</i> <i>제 25조의 3 규정여</i> <i>하도급 신고는</i> <i>2010. 4. 12. 자당에</i> <i>작성된 단서들은 향후 기간을 준수 소로</i> <i>시정조치 받은 단서</i> <i>위반의 경정조치에 대한 단서</i>	-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하자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 정산 하도급대금 중 유보하였던 10%의 금액 2,830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79백만원을 2011.8.19. 모두 지급 하였음(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급사업자와 관련 피심인에게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금액 771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경고. - 피심인이 2011.5.19. 어음할인료 17,215천원을 지급하여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경고

2. 또한, 귀사의 배관공사 돌관공사의 서면미발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설비계 추가공사비, 기계공사 제경비, 기계공사중 TANK 제작·설치비, 배관공사 도장공사비, 배관공사 돌관 공사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4호에 해당되어 "심의절차종료"의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사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하도급거래 적정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범위만, 귀사의 하도급거래 적정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가. 배관공사 돌관공사에 대한 서면미발급행위 :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돌관 할증 경우 객관적으로 그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 1) 가설비계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금액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 2) 기계공사 제경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선 지급한 금액 중, 구체적으로 기계공사 제경비가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 3) 기계공사중 TANK 제작·설치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 4) 배관공사의 도장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5) 배관공사의 돌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돌관 할증의 경우 객관적으로 그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3.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상 기타행위 중 귀사의 기계공사의 출공 상세설계비 미지급행위, 현장출입제한에 따른 추가장비비 미지급행위, 부당한 처리비용 및 처리비용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및 제46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심의절차종료" 하고, 기타행위 중 나머지 가설사무실비용 및 폐기물처리비 부당공제행위, 현금결제비율 미준수행위, 제형비 과소반영행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미조정행위, Air Purge System 설치 시 파손으로 인한 비용의 일방적 부당공제행위는 범위반 혐의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거 "무혐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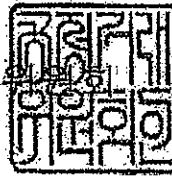
→ 부당한 하도급대금 위임이다.  
 → 심사보고서 PB.  
 → 공정위 판례사례 (2019 제20519)

하도급법 제46조 제4항 제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민사소송  
 공판문  
 문정-2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원

심재무

하도급개선과장

전결 09/02

신동철

협조자

시행 하도급개선과-858

(2011. 09. 02.)

접수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공정위 기업협력국 하도급개  
선과

/ <http://www.ftc.go.kr>

전화 02-2023-4509

전송 02-2023-4505

/ [smhyn@ftc.go.kr](mailto:smhyn@ftc.go.kr)

/ 비공개(7)

2011. 9. 06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아하엠텍(주) 대표이사 안동권 귀하  
(경유)  
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 2010하개1221

사건명 :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장규

1. 귀사가 2010.4.7. 우리위원회에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한 위 사건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제19회 제2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피심인의 가설비계추가공사, 서면미발급행위,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연이자미지급행위, 어울합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경고"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배관공사 불관공사에 대한 서면미발급행위 :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둘관 할증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설비계 추가공사비, 기계공사 제경비, 기계공사 중 TANK 제작·설치비, 배관공사 도장공사비, 배관공사 둘관공사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항에 해당되어 "심의절차종료"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다. 불공정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가. 배관공사 불관공사에 대한 서면미발급행위 :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둘관 할증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가설비계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금액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P11)

2) 기계공사 제경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선지급한 금액 중 구체적으로 기계공사 제경비가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P12)

3) 기계공사 중 TANK 제작·설치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P1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1) 부당한 라포링 배급 2,529,025,445원

4) 배관공사의 도장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P10)

5) 배관공사의 도장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출판(할증의) 경우 객관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종료 (P11)

아래 배관 공사비 배급에 부당한 차등배급에 대해 (사안서 2쪽)

4.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신고내용 중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피심인의 기계공사의

철골상세설계비 미지급행위, 현장출입제한에 따른 추가장비비 미지급행위, 부당산재처리요구

및 처리비용 미지급행위, 가설사무실비용 및 폐기물처리비 부당공제행위, 현금결제비용 미준수

행위, 제경비 과소반영행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미조정행위, Air Purge System 설치 사

파손으로 인한 비용의 일방적 부당공제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46조 제1호, 제47조 제1항에 의거

"심의절차종료" 및 "무혐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 배급 미지급에 따른

- 다음 -

법 제132 조 제1항 및 6항 제8항의 규정에 기인하는 부당배급에 대해 (사안서 30쪽)

가. 기계공사의 철골상세비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수행 한 것이 상세설계인지 Shop Drawing(시공상세도)인지 기술적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건설위탁의 범위에 설계는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심의절차종료 (사안서 25쪽)

나. 현장출입제한에 따른 추가장비비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공사현장에 지역장비업체만 출입토록 제한한 것으로 하도급법을 적용 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심의절차종료 (P11)

다. 부당산재처리요구 및 처리비용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해당비용을 신고인에게 지급해주시기로 한 것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심의절차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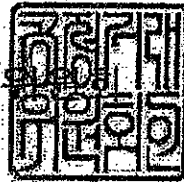
라. 가설사무실비용 및 폐기물처리비 부당공제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축조한 현장 가설 사무실 사용은 신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신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가설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설사무실 임대료는 사용면적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매월 공제하기 전에 신고인의 확인을 거쳐 공제한 사안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피심인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약 내역에 반영하여 주었으며, 피심인과 신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종의 수급사업자와 협의 후 진행한 사안으로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피심인이 전량 처리를 하고 그 해당 비용을 그 현장에 공사를 담당하는 신고인을 포함한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거쳐 공제한 사안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 ( 다. 현금결제비용 미준수행위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미조정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기성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을 증액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혐의
- 바. 제경비 과소반영행위에 대해서는 제경비는 입찰시 신고인이 기입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심인이 제경비를 과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 사. Air Purge System 설치 시 파손으로 인한 비용의 일방적 부담공제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 발주자 및 신고인 3자가 진행한 회의내용을 보면 "Gas Exhauster에 취부되는 Air Purge System은 신고인이 설치 시 파손되었으므로 신고인이 자재비 및 에바라 S/V 파견비를 지불 한다" 고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Air Purge System 에 대한 피심인의 비용공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붙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통지문 사본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심재무 하도급개선과장 전결 09/02  
신동열

협조자

시행 하도급개선과-857 (2011. 09. 02.) 접수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공정위 기업협력국 하도급계 / http://www.ftc.go.kr  
전화 02-2023-4509 선과 3 / 송 02-2023-4505 / smhyn@ftc.go.kr / 비공개(7)